참고 1 장애인 대상 감염병 대응 매뉴얼 신구 목차 비교

1판 목차	2판 목차
CHAPTER I. 개요 1. 장애인의 고려 필요성 2. 감염병상황에서 장애 특수성 [참고] WHO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장애인 고려사항 CHAPTER II. 장애인대상 고려사항 1. 감염병 정보접근성 제고 2. 이동서비스 지원 3. 감염병 예방 관리 및 필수 의료지원 강화 4. 돌봄 공백 방지 5. 장애인시설 감염예방 및 서비스 유지	CHAPTER I. 개요 1. 장애인 고려 필요성 2. 감염병상황에서 장애 특수성 3. 장애인 대상 고려사항 4. WHO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장애인 고려사항
(신 설)	CHAPTER II. 코로나19 대응단계별 세부 고려사항 1. 개요 2. 지자체 세부 고려사항 3. 관련 주요기관 세부 고려사항
CHAPTER III. 주요 장애인 서비스별 대응 지침 1. 장애인 복지서비스 제공기관 대응 지침 2. 장애인 거주시설 대응 지침 3.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유지 지침	CHAPTER III. 주요 장애인 서비스별 대응 지침 1. 장애인 복지서비스별 대응개요 2. 장애인 복지서비스 제공기관 공통대응 지침 3. 일상생활 지원 4. 건강 및 의료 지원 5. 그 밖의 지원
참고. 의사소통 지원 등 배포용 자료 1. 장애인 코로나19 안내서(배포용) 2. 시각 지원판/의시소통 도움 그림·글자판 사용 매뉴얼	부록. 장애인 코로나19 안내서 등 1. 장애인 코로나19 안내서(3판, 배포용) 2. 시각 지원판/의사소통 도움 그림·글자판 사용 매뉴얼 3. 주요 장애인 복지서비스 코로나19 대응 안내 4. 코로나19 장애인 지원 사례 및 추진현황

참고 2 신구 대비표

사업명	1판	2판 개정	개정사유
I. 개요 (3쪽)	 기요 당 매뉴얼은 감염병 상황에서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장이 장애인의 특수성을 고려한 감염병 대응 및 지원 계획 수립 등에 참고할 수 있도록 작성됨 	I. 개요 동 매뉴얼은 감염병 상황에서 지자체장이 장애인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한 감염병 대응 <u>지원 계획을</u> 수립하고 지원하는 자료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제시함	각 기관의 역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명시
	1. 장애인 고려 필요성 ■ 장애인은 아래 특성으로 인해 감염병에 더욱 취약한 집단으로 일반 감염병 대응 매뉴얼에 더해 추가적인 고려사항이 필요함 - (감염 위험 높음) 손씻기 등 일반적 예방수칙을 이행하기 어렵고, 보조인 등의 일상적 도움이 필요하여 사회적 거리두기의 어려움, 장애인 보조기기 사용, 점자 활용 등에 물리적인 접촉 필요성 있음 - (감염 피해 심각) 기존 건강상태, 특히 호흡기기능, 면역체계 기능, 심장질환 또는 당뇨병과 관련된 상태를 감염시 더욱 악화시키고, 의료 서비스의 접근에 어려움이 있음	1. 장애인 고려 필요성 ■ 장애인은 아래의 특성으로 감염병에 취약하기 때문에 일반 감염병 대응 매뉴얼에 더해 추가적인 고려사항이 필요함 - (감염 위험 높음) 마스크 착용, 손씻기 등 일반적예방수칙을 이행하기 어렵고, 보조인 등의일상적 도움이 필요하여 사회적 거리두기의어려움, 장애인보조기기 및 점자 사용으로 물리적인 접촉 발생 등 감염 위험이 높음 - (감염 피해 심각) 감염시 기존 건강상태, 특히호흡기 기능, 면역체계 기능, 심장질환 또는당뇨병과 관련된 상태를 더욱 약화시키고, 의료서비스의 접근에 어려움이 있음	워딩 수정
1. 개요 2. 감염병 상황에서 장애 특수성 (4~5쪽)	2. 감염병상황에서 장애 특수성 ● (의사소통제약) 시각정보습득이나 음성의사소통에 제약이 있거나, 언어적 의사소통은 가능하나, 의미적 소통에 어려움을 가져 충분한 정보 습득과 이해 부족 발생 - 시각·청각 장애인, 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 뇌병변장애인 등 ● (이동제약) 와상, 전동휠체어 이용 등 보행상 장애가 있는 경우 자력으로 이동이 불가능하여 조력자의 도움 필요 (중략) (코로나19 대응 지침 고위험군에 포함된 장애유형〉 내부기관의 장애 코로나19 고위험군의 기준	2. 감염병상황에서 장애 특수성 (중략) ● (의사소통제약) 시각정보습득이나 음성의사 소통에 제약이 있거나, 언어적 의사소통은 가능하나, 의미적 소통에 어려움을 가져 충분한 정보 습득과 이해 부족 발생 - 시각·청각·언어·지적·지폐성·뇌병변 장애인 등 ● (이동제약) 와상, 휠체어 이용 등 보행상 장애가 있는 경우 자력으로 이동이 불가능하여 조력자의 도움 필요, 시각장애, 발달장애(지적장애, 자폐성장애)가 있는 경우 보행은 가능하지만 목적지까지 이동할 수 있도록 안내 필요 (중략) 〈코로나19 대응 지침 고위험군에 포함된 장애유형〉 내부기관의 장애 일반 코로나19 지침 고위험 구인 가증	중복 문구 삭제 및 세부 내용에 대한 구체적 설명의 필요성
	(내용 생략) (내용 생략)	내부기관의 장애 글은 고르다 등 자급 모두다 군의 기준 (내용 생략) (내용 생략)	

사업명	1판						:	2판 개	정			개정사유	
	(중략) ● (밀접 돌림 사회적 거등으로 됨 - 활동지원 언은 서비 어려운 된 활동지원 기초생활 (중략)	리두기 를봄 단 , 장애인 스가 단 문제 발 된 필요지	실천이 절시 일 !복지관 : 설절될 경 생 : 식사: 역움이	어렵고, I상생활 · 등을 (경우 일· 보조, 호 있는 경	대면홀 · 곤란 이용하 상생활 <u>하장실</u> 당애인	등 제약 는 장애 영위가 이용 등	(중략) (중략) (명접 돌 사회적 : 제약 등의 - 활동지원 인은 서비 어려운 :	거리두/ 으로 돌 !, 장애(비스가 [기 실천 봄 단절 인복지곤 단절될 생	이 어택 설시 일 난 등을 경우 일	렵고, 다 상생활 이용하 상생활	H면활동 곤란 = 장애 영위가	
	장애유형	소통제약	이동 제약	감염 취약	밀접 돌 <u>봄</u>	집단 활 동	장애유형	소통제약	이동 제약	감염 취약	밀접 돌봄	집단 활동	
	지체						지체		7///			7///	
	시각	시각 정보					시각	시각 정보					
	뇌병변	9/14			////		뇌병변	O/4					
	청각	음성 의사 소통					<u>청각·언어</u>	음성 의사 소통					
	발달(지적, 자폐성)	의마 의사 소통					발달(지적, 자폐성)	의미 의사 소통					
	내부기관 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1. 개요	II. 장애인대성	상 고려	사항				3. 장애인 [개상 고	<u>려사항</u>				
3.장애인 대상 고려사항 (6-7쪽)	<u>감염병 유행</u> 정보접근성 기 및 관리 등	제고, 이	<u>동서비</u>	스 지원	, 감염	병 예방	감염병 유 정보접근성 관리 및 팔 시설 이용	제고, 0 수 의료지	동서비 <u>/</u> 원 강화,	<u>지원</u> , 돌봄 공	감염병 0 백 방지,	#방 및 장애인	장애인의 어 려움 및 관 련 고려사항 을 간략하게 정리하여 보
	<u>1. 감염병 정</u>	정보접근	성 제고	<u> </u>			<u>1) 감염병 경</u>	정보접근	<u> 성제</u>	<u> </u>			여줌
	● 주요 대성 (중략)	S.					● 주요 대 (중략) - <u>이동의 0</u> <u>장애인 :</u>	- <u> </u> 려움이	있는 지	[체장애	<u>인, 내누</u>	<u> </u>	
	● 대상별 고 - (청각장애 과정에 수 하고, 자 상담(24/	인) 뉴스 -어통역 막 의무	s, 감염s 서비스 화 및 S	. 및 화 명상 수	면해설 어 상담	을 지원	● 대상별 : - (공통) / (병원)를 해당 선발 등 지원	시·도내 지정하 ^{별진료소}	<u>지원0</u> 고, 장0	배인 요	청(예약	등) 시	

사업명	1판	2판 개정	개정사유
	- (시각장애인) 감염병 관련 인쇄물 배포시 문자 인식이 가능하도록 음성변환출력*이 가능한 형식으로 제공 *QR 코드 또는 보이스아이를 포함하여 인쇄 (중략) - (공통) 시·도내 의사소통 지원이 가능한 선발 진료소(병원)를 지정하고, 장애인 요청(예약 등 시 해당 선별진료소로 이동할 수 있도록 지원 * 보건소 및 선별진료소 등 관련 의료기관, 생활 치료센터 내 수어통역 및 문자통역 시스템 구설	1339 카카오톡·영상 수어 상담 지원 안내 및 홍보, 지자체별 코로나19 관련 정보 제공시 음성변환출력(텍스트파일, QR코드 등)이 가능한 코로나19 인쇄물 형식으로 제공 - (시각정애인) 감염병 관련 인쇄물 배포시 문자 인식이 가능하도록 음성변환출력*이 가능한 형식으로 제공, 온라인 제공 시 텍스트 파일 포함, 점자 읽기 가능한 항균코팅필름 설치 * QR코드를 포함하여 인쇄, 중요 정보 문자 발송 시 휴대폰 내 음성지원을 위하여 45자 이내 발송 권고 (중략)	
	● <u>코로나19 지원 사례</u> - 구분 청각·언어장애인 의사소통	● 감염병 정보접근성 제고 코로나19 지원 사례 →분 사례 내용	
	- 전	<u>○ (청각장애) 코로나 관련 중앙 및</u> <u>→ 지자체 브리핑 시 수어통역 제공.</u> 방송사업자 재난방송시 수어통역	
	영상수어상담 (내용 생략)	- 음성변환출력 - 지원 (내용 생략)	
	구분 시각장애인 의시소통 음성변환 출력 지원 (내용 생략) 구분 발달장애인, 뇌병변장애인 등 의시소통	어 (발달, 뇌병변 등) 시각지원판 등 고로나19 관련 주요 설명자료 배포 (이라 생략)	
	# # # # # # # # # # # # # # # # # # #	- 1	
l. 개요 3. 장애인 대상	2. 이동서비스 지원 (중략)	2) 이동서비스 지원 (중략)	축적된 이동 및 생활 지 원의 실제
고려사항 (8쪽)	▼로나19 지원 사례 구분 이동 및 생활 지원 확진자 격리시 (내용 생략) 이동제약에 따른 생활지원 (내용 생략)	● 이동서비스 지원 코로나19 지원 사례 구분 사례 내용 확진자 격리시 ○ 구급차 이용한 지정병원, 생활치료 센터 이송 지원 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 ○ 전동휠체어 이용자 특별교통수단 (특별교통수단) 코로나19 방역처리 이동체계 마련 이동제약에 따른 생활지원 (내용 생략)	사례를 예시 로 들어 지 자체에서 해 당 사업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

사업명	1판	2판 개정	개정사유
		구분 사례 내용 방역용품 ○ 장애인 거주시설 마스크, 손소독제 현장지원 ○ 장애인 마스크 무상보급 사업을 위해 마스크 배분	
I. 개요 3. 장애인 대상 고려사항 (9-10쪽)	3. 감염병 예방 관리 및 필수 의료지원 강화	3) 감염병 예방 관리 및 필수 의료지원 강화	고위험군 외의 장애인들의 유형에 대한 서술을 하여 기타 장애인의 어려움에 대한 서술을 하여 기타 장애인의 어려움에 대한 수 있도록 표기, 코르다 19 대응지침 내용 추가

사업명	1판	2판 개정	개정사유
	 ● 시·도 병상 배정 관리체계 구축 (중략) ● <u>코로나19 지원 사례</u> 	 사도 병상 배정 관리체계 구축 (중략) 감염병 예방 관리 및 필수 의료지원 강화 코로나19 지원 사례 	
	구분 방역 및 의료지원 교위험군 (내용 생략) 필수의료 제공 (내용 생략) 이 장애인 거주시설 마스크, 손소독제보급을 위해 국비 지원으로 위해 국비 지원이 가장하다면 바로 지원이 가구나 장애인 대리구매 확대 적용이 가구나 장애인들록증 지참 시 공적이 마스크 대리구매 하용이 가구나 장애인들록증 지참 시 공적이 마스크 대리구매 하용이 가장하는 다리가 다른 장애인마스크 무상보급 사업 지원이 가장보다고 가장하는 가장 기원이 가장	구분 사례 내용 고위험군 (내용 생략) 필수의료 제공 (내용 생략) 방역물품 이 장애인 거주시설 마스크, 손소독제 보급을 위해 국비 지원	
I. 개요 3. 장애인 대상 고려사항 (11-12쪽)	4. 돌봄 공백 방지 (중략) ■ 대상별 고려사항 - (활동지원) 추가적인 급여 제공, 제공인력 돌확대 등 장애인당사자 또는 돌봄제공자 격려상황에서도 중단없는 서비스 제공 지원 (중략) (사진 삭제) (중략) ■ 코로나19 지원 사례 - 보 돌봄 등 지원 대책 ○ (중략) ○ 자가격리 중인 장애인을 돌보는 경우원래의 급여량과 무관하게 24시간 활동지원 대공 대공 제공 대원 대공에 의한 돌봄도 급여 제공	확대 등 장애인당사자 또는 돌봄제공자* 격리 상황에서도 지속적인 서비스 제공 추진 * 활동지원사 등 서비스 제공 인력의 백신접종 으로 인한 휴가 발생시 대체인력 등 대응방안 마련 (중략) • 지자체 협조 사항 - (현장지원) 종사자 및 대상자 관련 안전에 엄중	협조 사항을 명확하게 서술함으로써 지자체의 역할 강화, 축적된 방지의 실제 방지의 실제 이어서 해당 사업에 대해 업게 이해할 수 안내

사업명	1판	2판 개정	개정사유
	구분 돌봄 등 지원 대책 ○ 돌봄 서비스 제공인력의 원활한 확보를 위해 현장 요구를 반영하여 제공인력 자격요건 및 등록절차 완화* * 보호자 또는 장애인이 동의하면 보건소 또는 의료기관으로부터의 기본적인 안전교육 이수 후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 가능 (중략) ○ 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의 돌봄 부담 완화를 위해 가족돌봄비용* 지원 대상 장애인 자녀 연령 18세 이하로 확대 * 무급인 가족돌봄휴가 사용에 따른 비용보존 긴급 지원금 지급대상을 장애인 자녀의 경우 8세 이하에서 18세 이하로 확대 * 무급인 가족돌봄휴가 사용에 따른 비용보존 긴급 지원금 지급대상을 장애인 자녀의 경우 8세 이하에서 18세 이하로 확대 ○ 가정에서 장애인 자녀 돌봄이 어려운 경우 학교에서 긴급 돌봄 서비스 제공 - 특수학교 유·초·중·고·전공과 과정의 장애학생(교육부) ○ 긴급돌봄서비스 지원 체계 구성(대구 사회서비스원) (이하 생략) 생활 지원	● (격리시설 마련) 사회복지시설에서 다수의 자가 격리자가 나올 경우를 대비하여 격리시설(1인실원칙)을 사전에 확보할 수 있도록 조치 필요 - (시설휴관) 지자체와 시설이 협의하여 돌봄이 필요한 취약계층에 대한 돌봄 서비스 제공이 유지될 수 있도록 조치 필요 ●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지침 사항 - (방문조사) 신규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신청자 등을 대상으로 이용자 선정조사 실시를 위해 자택을 방문할 경우 조사자는 반드시 예방수칙을 숙지하고 마스크 착용 등 예방조치 준수 - (교육) 각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주간활동・방과후활동서비스 제공인력 양성과정 및 보수교육 등을 연기하도록 권고 ● 돌봄 공백 방지 코로나19 지원 사례 - 그분 - 사례 내용 ○ (중략) ○ 자가격리 중인 장애인을 돌보는 경우 원래의급여량과 무관하게 24시간 활동지원 급여제공(활동지원사를 통한 돌봄이 어려워가족이 돌볼 경우, 가족에게 급여 지급) ○ 돌봄 서비스 제공인력의 원활한 확보를위해 현장 요구를 반영하여 제공인력 자격요건 및 등록절차 완화 (중략) ○ 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의 돌봄 부담원회를위해 기족돌봄비용 지원 대상 장애인 자녀연령 18세 이하로 확대 ○ 긴급돌봄서비스 지원 체계 구성(대구사회서비스원) (이하 생략)	
I. 개요 3. 장애인 대상 고려사항 (13쪽)	5. 장애인시설 감염예방 및 서비스 유지 (중략) 고려사항 - 돌봄체계 중단으로 인한 가족 돌봄이 힘든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 장애인 복지시설 감염 예방 * 복지관 등 감염예방을 위한 프로그램 인원 적정화, 운영방식 유연화 등 조치 - 필수 서비스 유지를 위한 유관 서비스 연계* 체계 구축, 긴급돌봄서비스 인력투입, 사회복지 시설 대체 인력(퇴직자, 봉사자 등) 우선 투입	5) 장애인 이용시설 감염예방 및 서비스 유지 (중략) ② 고려사항 — (복지시설 감염예방) 돌봄체계 중단으로 인한 가족 돌봄이 힘든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 장애인 복지시설 감염예방 * 복지관 등 감염예방을 위한 프로그램 인원 적정화, 운영방식 유연화 등 조치 * 장애인거주시설의 경우 종사자 대상 PCR 검사 지속적 실시	축적된 장애인 시설의 실제 지원 사례를 예시로 들어 지자체 에서 해당 사업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

사업명		1판		2판 개정	개정사유
	활동지원 - 특히, 장에 및 감염의 주변 생활 마련 * 임시시원 주거 혼	분 등 유지, 주간활동 제공기관 휴관 시원서비스 대체 이용 등에인 생활시설 대상 예방적 격리실시으로 폐쇄가 발생하는 경우 임시시설, 활치료센터, 병원 등 지역 대응체계설: 1인1실, 화장실 등이 갖추어진 한경지원 및 인력 재배치 의 지원 사례 돌봄 등 지원 대책 ○ 장애인 이용시설 휴관 권고 및 휴관시 돌봄 광백이 발생치 않도록 필수서비스 제공을 위한 긴급돌봄 등 유지 요청 ○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제공기관 휴관시 활동자원서비스 대체 이용 조치 및 비용 청구조건을 완효하여 제공기관의 정상 운영 지원 * 비용청구조건 완화(3.11일) 이후 제공기관 우영 비율 증가(3.5일 46% → 3.24일 78%) ○ 종시자가 업무 배제된 경우 돌봄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사회복지 시설 대체인력*'을 대상시설에 우선 투입 * 기관별 퇴직자 또는 사회봉사자 등의 예비 인력풀 확보	무입, 사 등) 우선 * 긴급돌 활동지 - (운영중) 감염 등 주변 생 등 지역 * 임시시 주거 휴	본 등 유지, 주간활동 제공기관 휴관 시원서비스 대체 이용 등지 대비) 특히, 장애인 생활시설의 집단으로 운영이 중지될 경우 임시시설*,활지료센터, 병원,활동지원기관 협약대 대응체계 마련설: 1인 1실,화장실 등이 갖추어진환경지원 및 인력 재배치	
	필수 서비스 유지	○ 장애인 생활시설 내 확진자 발생시 확진자 이송자원 및 추가 집단점염 방지를 위한 방역, 격리시설 마련 * (대구 북구 ○○○) 대구 병실 부족으로 서울지역으로 최우선 이송 * (경북 칠곡 ○○○) 방역기간 동안 음성자 이송(송정자연	필수 서비스 유지	필수서비스 제공을 위한 긴급돌봄 등 유지 요청 이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제공기관 휴관 시 활동지원서비스 대체 이용 조치 및 비용 청구조건을 완화하여 제공 기관의 정상 운영 지원	
	시설 폐쇄 대응	휴양림) 격리 * (경북 예천 ○○○) 임시 격리 공간으로 6개 경로당 분산 격리 (내용 생략)			

사업명	1판	2판 개정	개정사유
I. 개요 4. WHO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장애인 고려 사항 (14쪽)	2. 감염병상황에서 장애 특수성 (중략) [참고] WHO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장애인 고려 사항	4. WHO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장애인 고려사항 [표]	이동 배치
비. 코로나19 대응단계 별 세부 고려사항 (17-27쪽)	(신규)	CHAPTER II. 코로나19 대응단계별 세부 고려사항 (신규)	
III. 주요 장애인 서비스별 대응 지침 (31쪽)	CHAPTER III. 주요 장애인 서비스별 대응 지침 지자체의 상황에 따라 다음 내용을 탄력적으로 적용 1. 장애인복지서비스별 대응 개요 (신규)	CHAPTER III. 주요 장애인복지서비스별 대응 지침 지자체의 상황 및 지침 변화에 따라 다음 내용을 탄력적으로 적용 주요 장애인복지서비스별 분류 1. 장애인복지서비스별 대응 개요, 2. 장애인 복지서비스 제공기관 공통 대응 지침, 3. 일상생활 지원, 4. 건강 및 의료지원, 5. 그 밖의 지원으로 구성하였으며, 공통 사항은 2. 공통 대응 지침에 명시* 제공 서비스별 분류의 경우 '주요 장애인복지서비스 코로나19 대응 안내(P.95)' 참고 1. 장애인복지서비스별 대응 개요 감염병 정보 제공 및 상담서비스 접근성 제고 - (정보제공 강화) 감염병 상담서비스 관련 1339 카카오톡·영상 수어 상담 지원 안내 및 홍보, 지자체별 코로나19 관련 정보 제공시 음성변환 출력(텍스트파일, QR코드 등)이 가능한 코로나 19 인쇄물 형식으로 제공 - (의사소통 지원) '의사소통 도움 그림 글자판' 제작배포 및 영상 전화기 구비, 손말이음센터 수어통역센터 활용 등 안내	자치단체 장애인 사업 추진과정에서 사업담당자가 해야 할 업무를 각 사업별로 'CHAPTER 생애인 서비스별 대응 지침' 재구성

사업명	1판	2판 개정	개정사유
		- (긴급 활동지원) 자가격라확진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돌봄공백을 방지하기 위한 활동지원 특별급여 등 제공* 및 발달장애인 대체이용 허용** * 자가격리 활동지원 수급자 24시간 서비스 제공, 복자만 휴관 시 긴급활동급여(월 120시간), 보호자부재 시 특별지원급여 제공(월 20시간) 등 **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제공기관 휴관 시 발달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대체 이용 허용 • 장애인 학생 특별지원급여* 한시 제공(6개월) * 월 한도액 560.8천원/월 40시간	
III. 주요 장애인 서비스별 대응 지침, 1. 장애인복 지서비스 별 대응 개요 (32~33쪽)	(신규)	- (발달장애인 지원 확대) 도전적 행동을 동반한 최종증 발달장애인에게 주간활동 1인 서비스 운영 - (가족돌봄휴가) 가족돌봄비용* 지원 대상 장애인 자녀 연령 확대 * 무급인 가족돌봄 휴가 사용에 따른 비용보존 긴급 지원금 지급대상을 장애인 자녀의 경우 8세 이하에서 18세 이하로 확대 - (긴급돌봄 실시) 사회서비스원* 중심 긴급돌봄지원단 구축으로 서비스 공백, 가족 확진 등에 대응하여 긴급돌봄 제공 및 인력지원 * (설립·운영 지역) 서울, 대구, 대전, 인천, 광주, 세종, 경기, 경남, 충남, 강원, 전남 ● (사회서비스원) 가족·종사자 확진, 돌봄 제공자 자가격리 등으로 발생한 돌봄 공백에 대응하여 가정·시설에 돌봄인력 지원, 자가격리 등으로 인한 격리사설 입소자를 대상으로 긴급돌봄 서비스 제공 ● (사회서비스원 미설치 지역) 고령확진자 등의 신체수발을 위한 돌봄인력* 모집(인력풀마련) 및 사전교육 실시 후 중수본에 연계, 지자체는 필요시 중수본에 돌봄인력 지원 요청, 중수본은 인력 매칭 * 식사, 목욕, 화장실 등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고령 및 장애인 확진자 돌봄 - (돌봄인력 확대) 돌봄 서비스 제공인력의 원활한 확보를 위해 자격요건 및 등록절차 완화*, 온라인 교육, 대체인력 투입 등 실시	

사업명	1판	2판 개정	개정사유
		* 자가격리/확진된 수급자에 대해 활동지원사를 통한 지원이 어려운 경우 누구나 보건소 또는 의료기관으로부터의 기본적인 안전교육이수 후 활동지원사로 등록하여 서비스 제공가능. 복지관 등 이용시설 휴관으로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하기 곤란한 발달장애인 대상활동지원 가족급여한시 허용 - (상담센터 운영) 코로나19에 따른 자가격리,확진 시 행동요령 및 추가세비스 안내 등을 위해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17개소)*를 설치·운영*당사자에게 지역별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번호안내 장애인 복지시설 감염 예방 및 필수 서비스유지 지원 - (시설운영 및 방역지원) 코로나19 운영준수사항*안내 및 방역물품 지원**,주간활동 비용청구조건 완화로 제공기관 정상운영 지원** 외부인 출입 관리 강화,입소자·보호자의정서안정조치 병행,밀집도 최소화 등** 장애이돌보미,이용자 가정 등 마스크,손소독제,체온계 등 방역물품 지원 - (관리체계확립) 감염 발생 시 확진자·밀접접촉자 공간 분리 학적자는 감염병전담병원·생활치료센터 등으로 신속 이송하고,접촉자는 임시격리시설*을 마련하여이송 * 지자체에서 접촉자 격리 목적의 임시생활시설운영 중 - (방역 강화)선제적 진단검사(PCR)실시,확진자 발생시 중수본·방대본 현장대응팀 즉시파견 요청,긴급돌봄인력추가확보 • 장애특성고려 대책 강화 - (최신 방역지침 적용)검체채취,자가격리,입원등과정에서 장애인 특성을 감안한 조치실시 한검체채취 또는 자가격리 시 보호자 동행 하용,기저질환 치료여건 등 고려한 병실 배정,뇌병면・발달장애인 등 마스크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	

사업명	1판	2판 개정	개정사유
사업명	1판	2판 개정 - (혈액투석 지원) 지자체 내 의료기관에 신장 장애인 자가격리자 등 투석 시 받을 수 있는 지원* 안내 * 격리실 입원료 산정 및 본인부담금 지원, 신장 장애인 등 자가격리자가 외래로 내원하여 혈액투석을 시행하는 경우 가산수가 한시적 신설 안내 ● 장애인 이용 가능 병상 안내 - (장애인 전담병상 안내) 필요 시 장애인 전담 병원인 국립재활원 안내 • (의료인력) 의사, 간호조무사, 방사선사 배치 (돌봄인력) 병상생활(식사도움, 배변 등)지원 위해 간병인, 요양보호사 등 배치 • (병상수) 10개 운영 중(상황에 따라 최대 23개 가능) - (생활치료센터) 장애인용 객실 구비, 안전바설치, 장애인 화장실 등 장애인 편의시설이 갖춰진 생활치료센터에 장애인 우선 배정	개정사유
III. 주요 장애인 서비스별 대응 지침, 2. 장애인 복지 서비스기관 공통 대응 지침 (34쪽)	1. 장애인 복지서비스 제공기관 대응 지침 ■ 코로나19 관리체계 및 유관기관 협조체계 구성 - 직원, 이용자 및 시설 환경관리, 상황 발생시조치 등, 대비·대응 계획 수립 및 시행 • 감염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코로나19 예방 및 관리 책임성을 부여 • 전담 담당자(직원 증상 모니터링 및 신고접수, 시설 내 위생물품 비치 파악 등) 지정 - 의심환자(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 등 발생 시 즉시 대응을 위해 유관기관*(시·도, 시·군·구 보건소 및 의료기관)과의 비상연락체계 구축 * 시설 소관부서 - 보건소 - 소방서 - 의료기관(인근 선별진료소, 이송 병원)	2. 장애인 복지서비스 제공기관 공통 대응 지침 * 각 항목별 세부 사항은 '사회복지시설 대응 지침 [7팬(2020.11.11.)' 및 '사회복지서비스 유지를 위한 공통 대응 지침(2020.02.21.)을 확인 ● 코로나19 관리체계 및 유관기관 협조체계 구성 ■ 사회복지시설 내 감염관리체계 구성 ■ 감염관리책임자(방역관리자) 등 * 지정, 코로나 19 예방 및 관리 책임성 부여, 근무자관리, 시설환경관리, 상황발생 시 즉시 대응체계를 유지토록 함 * 감염전담 담당자(증상 모니터링 및 신고접수, 시설 내 위생물품 비치 파악 등) 등 — 종사자・이용자・입소자・방문자(자원봉사자 포함) 등 명단 작성·보관 *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권고) 또는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 (거주지). 전화번호 또는 개인안심번호, 4주 보관 후 폐기) ・ 의심환자(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 등 발생 시 즉시 대응을 위한 유관 기관 * 과의 비상연락 체계 구축 * 시도 및 시군구 소관부서 -관내 보건소 - 소방서 - 선별진료소 - 의료기관	대응지침에 따른 변화 내용 현행화

사업명	1판	2판 개정	개정사유
	● 감염예방을 위한 관리 철저 ■ 감염병 예방 교육·홍보 - 직원 및 시설 이용자 대상 코로나19 질병정보 및 손씻기, 기침예절 등 행동 수칙 교육실시 - 이용자에 대하여 발열 또는 코로나19 임상 증상이 있는 경우 이용이 제한될 수 있음을 고지하고 주요 장소에 안내 * 코로나19 주요 임상증상 : 발열, 기침, 호흡 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 소실 또는 폐렴 등 - 손씻기, 기침 예절 등 <u>코로나19</u> 예방을 위한 예방 수칙 등 각종 홍보물*을 시설 내 주요 장소에 부착 * 관련 홍보물은 <u>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u> (www.kcdc.go.kr)에 게시된 자료 활용	 감염예방을 위한 관리 철저 ■ 시설 이용자, 시설 종사자 등 감염병 예방 교육·홍보 	대응지침에 따른 변화 내용 현행화
III. 주요 장애인 서비스별 대응 지침, 2. 장애인 복지 서비스 제공기관 공통 대응 지침 (35쪽)	■ 환경 위생 관리 - 기관 내 화장실 등 개수대(비접촉식 수도꼭지 등)에 손 세정제(액체비누, 손소독제(알콜 70%이상))와 종이타월 등을 충분히 비치 • 기침시 사용한 휴지는 바로 처리할 수 있도록기관 내 휴지 및 쓰레기통을 곳곳에 비치 - 기관 내, 통근버스, 기숙사 등 주요 공간의청소, 소독 및 환기 강화 • 사람의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에 대한소독 강화 * 문 손잡이, 난간, 다양한 터치 장치, 책상,탁자,의자,전화,컴퓨터 키보드는 하루에한번 이상 소독하며,출입문이나 엘리베이터 등은 더 자주 소독 - 시설 내 공기정화 및 주기적인 환기 실시	■ 환경 위생 관리 - 시설 내 화장실 등에 개수대(비수동식 수도꼭지 등), 손 세척제(액체비누, 알콜 70% 이상 손소독제 등)와 휴지 등을 충분히 비치 · 손 씻기 후에는 종이 타월 등으로 깨끗이 닦도록 함 · 시설 내 휴지를 비치하며 기침 시 사용한 휴지를 바로 처리할 수 있도록 쓰레기통을 곳곳에 비치 - 시설 내 주요 공간의 청소, 소독 및 환기 강화· 사람의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에 대한소독 강화(일 1회 이상) * 문손잡이, 난간, 다양한 터치 장치, 책상, 탁자, 의자, 전화, 컴퓨터 키보드는 하루에 한 번이상 소독하며, 출입문이나 엘리베이터 등은더 자주소독 · 시설 내 공기정화 및 환기 실시(일 2회 이상 자주) * 환기는 상시로 하되, 에어컨 가동시, 2시간마다 1회 이상 권고(생활속 거리두기 세부지침 '에어컨') - 시설 내 마스크, 체온계, 손소독제 등 감염예방 위한 필수물품을 충분히 비치 · 종사자, 자원봉사자 등은 수술용 또는 보건용마스크를 착용	

사업명	1판		개정사유
III. 주요 장애인 서비스별 지침, 2. 장애인 서비스 기관 서비스 기관 지침 (35~37쪽)	● 기관출입 시 직원, 이용자 및 방문객 관리 강화 - 복지관 등 감염예방을 위한 프로그램 인원 적정화, 운영방식 유연화 등 조치 - 기관 출입 및 근무 시 발열 확인 • 직원 등에 대한 1일 2회 발열 또는 코로나 19 임상증상 확인 • 이용자 및 방문객 출입 시 체온 확인 * 이용자 및 방문객 명부 작성(인적사항. 연락처, 체온 등) - 발열 또는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있는 직원 또는 이용자는 출근 또는 이용을 금지 • 발열 및 코로나19 임상 증상이 나타나면 출근하지 않도록 하며, 타인과의 접촉 및 외출을 자체하고, 자택에서 3~4일간 경과 관찰 * 증상이 호전되지 않으면 콜센터, 보건소 (☎1339, ☎지역번호+120)로 문의, 선별 진료소를 우선 방문 진료 - 해외 여행력 있는 직원은 2주간 출근을 금지하고 재택근무(또는 온라인 근무) 등으로 전환 권고 * (예시) 3월 6일 15:00 입국자는 3월 20일 (D+14)까지 출근 금지 • 출근을 하지 않는 동안 14일간 타인과의 접촉 및 거주지 밖 외출을 자체하고, 발열 및 코로나19 임상증상이 나타나는지 스스로 관찰	 시설 입소·출입 시 관리 강화 시설 종사자 등은 개인위생 준수(마스크 착용. 손 씻기) 후 출입 안내 시설 이용자 · 입소자 · 종사자 등 1일 2회 발열. 호흡기 증상 확인 → 시설 내 발열. 기침 등의 증상이 나타날 경우. (1) 종사자는 관련 업무 배제. 방문자는 출입 금지 (2)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 중단(1) #(2): 유증상자 코로나19행동수칙 참조). (3) 입소자는 즉시 격리공간에 격리 조치 다음과 같은 시설 종사자 또는 이용자는 출근 또는 이용 중단할 것 ①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지 않을 때까지 출근 또는 이용자는 증상이 나타나지 않을 때까지 출근 또는 이용을 중단할 것 -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면 타인과의 접촉 및 외출을 자제하고, 자택에서 3~4일간 경과 관찰하고 출근 중지 → 증상이 호전되지 않으면 콜센터, 보건소(1339, 지역번호+120)로 문의, 선별진료소를 우선 방문 진료 (참고) 코로나19 행동수칙 申[유증상재] 1. 등교나 출근을 하지 마시고 외출을 자제하 주십시오 2. 집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시고 3~4일 경과를 관찰하여 주십시오. 3. 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호전되지 않으면 ① 콜센터, 보건소((②1339, ⑤지역 번호+120)로 문의하거나 ② 선별진료소를 우선 방문 하여 진료를 받으세요 4. 의료기관 방문 시 자기 차량을 이용하고 마스크 착용하십시오. 5. 전료 의료진에게 해외 여행력 및 호흡기 증상자와 접촉 여부를 알려주세요 ② 해외 여행력 있는 시설 종사자 또는 이용자는 2주간 출근 금지(재택근무, 온라인 근무) 또는 시설 이용을 중단할 것 시설 관리자는 상기 ①, ②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하여 휴가를 주거나 휴관 (이용중단) 조치를 할 때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주의 * (예시) 근로자 : 재택근무 또는 각종 휴가 / 어린이 등 : 결석 시 출석 인정 	대응지침에 따른 변화 내용 현행화

사업명	1판	2판 개정	개정사유
	* 의심 증상 발생 시 보건소 또는 질병관리 본부 1339 콜센터로 문의 - 고용주 또는 기관 관리자는 업무배제 대상 직원에 대해 휴가 등을 부여하고,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주의 - 고용주 또는 기관 관리자 등은 발열 또는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있는 경우 출근 하지 않도록 사전에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관리할 것 - 요양보호사·간병인·가사도우미 등 돌봄 서비스 종사자의 경우도 해외 방문력이 있는 경우 입국일로 부터 14일 경과 후 서비스 제공으로 관리 철저 * 입국일로부터 14일까지는 서비스 제공 금지 - 의심환자 발생시, 의심환자 대기 가능한 격리 공간을 기관 내 확보 * 격리공간은 문을 닫을 수 있고 환기가 잘되는 공간으로 지정 및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한 사람만 격리공간을 출입할 수 있도록 제한	· 시설관리자등은 시설종사자, 이용자에 대하여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출근 또는 이용을 하지 않도록 사전에 적극 안내하고 관리 · 시설 관리자 등은 가능한 영유아, 노인, 임신부,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이용 자제를 안내하고 관리할 것 · 의심환자 발생 시, 의심환자 대기 가능한 격리실을 시설 내 확보 * 격리공간은 문을 닫을 수 있고 환기가 잘되는 공간으로 지정 및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한 사람만 격리공간을 출입할 수 있도록 제한 ●시설 입소자의 면회・외출・외박 관련 * 거리두기 단계별 운영 가이드라인 참조하여 시설별 면회 수칙 마련할 것 - 면회는 철저한 방역 조치 전제하에 실시하되. 하루당 실시 인원 제한, 거리 두기 단계 상향조정된 지역의 면회자 제한하는 등 조치 * 단,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이상 발령 시 대면면회 금지하되. 입소자 정서적 안정을 위해 비접촉・비대면 면회 실시 권장 - 외출・외박도 방역수칙의 철저한 준수 하에가능하며 단계 격상으로 금지 원칙 적용 시①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 등 개학에 따른 등교(원). ② 생계유지 등을 위한 직장 출퇴근등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해당 입소자는 별도격리 생활공간 마련운영 * 단,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발령 시 외출외박전명금지 ● 이용자・자원봉사자 등에 대한 안내	

사업명	1판	2판 개정	개정사유
III. 주요 장애인 서비스별 대응 지침, 2. 장애인 복지 서비스 제공기관 공통 대응 지침 (37쪽)	(신규)	 전촉의 최소화 시설 종사자 간 또는 방문객 등과 약수 등 접촉하지 않기 * 시설 내 종사자가 감염원이 되어, 이용자에게 전파로 집단감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종사자의 감염 관리에 철저 - 종사자 방역수칙 교육 및 사전에 숙지하여 준수 하도록 관리 철저 - 종사자 간 식사, 모임, 회의 등을 할 때에도 개인방역수칙 준수하도록 관리 철저 출・퇴근 시간, 식사시간 교차 실시(유연근무제, 점심시간 시차 운영 활용) 실내・외 프로그램은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해당 공간의 4㎡당 1명 범위 내에서 운영 가능 좌석의 경우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준수(띄워 앉기, 가림막 등 포함) 	
III. 주요 장애인 서비스별 대응 지침, 2. 장애인 복지 서비스 제공기관 공통 대응 지침 (38쪽)	(신규)	● 시설 휴관(원) 시 조치 ■ 휴관(원) 시, 취약계층 긴급 돌봄서비스 제공 및 연계 * 거리두기 단계 관계없이 시설별 긴급 돌봄 서비스 방안 마련, 시설 운영 중지 시 빈틈 없는 서비스 제공 조치 * 아동(도시락, 식사지원 등), 노인(안부전화, 도시락 등), 장애인(활동지원) 등 - 코로나19 유행대비 사회서비스 유지를 위한 공통대응지침(20. 2. 21.) 및시설별 개별지침 활용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 -241(2020.02.21.) 참조	
III. 주요 장애인 서비스별 대응 지침, 2. 장애인 복지 서비스 제공기관 공통 대응 지침 (38-39쪽)	● 의심환자 발견시 조치 - 기관 내 의심환자 발견 시 관할 보건소에 즉시 신고 - 의심환자는 마스크 착용, 선별진료소로 이송시 까지 격리공간에서 대기 * 검사를 실시한 의심환자는 검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가격리	● 의심환자 발견 시 조치사항 ■ 시설 내 의심환자 발견 시 관할 보건소에 즉시 신고 - 의심환자는 격리실에 격리, 전용물품(개인용 수건, 식기류, 휴대전화 등) 으로 사용하기 ■ 보건소에서의 조치가 있기 전까지, 의심환자에 대해서는 마스크를 씌우고, 확보된 격리공간에서 대기하도록 함 * 보건소 도착 전, 환자와 접촉하는 담당자는 보건용 마스크, 일회용 장갑 등 개인 보호구 착용및 손위생 철저히 준수	대응지침에 따른 변화 내용 현행화

사업명	1판	2판 개정	개정사유
	- <u>의심</u> 환자의 보건소 이송 이후에는 알코올, 차아 염소산나트륨 등의 소독제를 이용하여 환자가 머물렀던 장소 소독	 - 임시 격리공간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 시·도 (보건소) 지시사항에 따라 선별 진료소 및 의료 기관으로 이송하며 타인에게 전파되지 않도록 의심환자가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함 - 입소자가 이송이 어려운 경우에는 격리공간에서 보건소 담당자가 검체 채취함 ● (의심)환자의 이송 이후에는 차아염소산나트륨, 알코올 등의 소독제를 이용하여 환자가 머물렀던 격리장소를 소독 ● (의심)환자와 접촉한 입소자·종사자에 대한 모니터링(「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유행대비 사회복지시설 대응 지침 서식 2 작성) - 의심환자와 접촉한 종사자는 의심환자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가 격리하며 의심환자의 검사 결과 음성이면 업무 복귀 - 의심환자와 접촉한 입소자는 의심환자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1인실에 배치 하고 의심환자의 검사결과 음성이면 해제 - 단, 발열,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있는지 확인하여 만일 이러한 증상이 나타날 시, 지체없이 관할 보건소에 연락토록 조치 * 밀접접촉자를 돌보거나 증상을 모니터링하는 직원은 반드시 보건용 마스크, 일회용 장갑등 개인 보호구 착용, 및 손위생 철저히 준수 	
III. 주요 장애인 서비스별 대응 지침, 2. 장애인 복지 서비스 제공기관 공통 대응 지침 (39-41쪽)	(신규) ■ 지자체 협조 사항 - (수급자격심의위원회) 주간활동서비스 수급자격 결정을 위한 수급자격심의위원회는 서면심의로 대체 가능 - (현장지원) 서비스 제공인력 및 이용자 관련 안전에 엄중하게 대처하되 불필요한 불안감에 서비스 제공 거부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과 지속 소통하고, 수행기관 업무 지원 확대 필요 - (연락체계 구축) 의심환자 등 상황 발생 시 즉시 신고를 위한 관할 시·군·구 및 시·도 비상연락체계 구축	또는 의심으로 격리된 종사자에 대하여 치료· 격리기간 동안 '유급휴가' 처리('20.1.30. 시달)	

사업명	1판			2판 개정	개정사유
		심 <u>게</u>		서비스 수급자격 결정을 위한 수급자격 회는 서면심의로 대체 가능 주요 내용	
		<u></u> <u> </u>	<u>방역</u> 조치	●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미준수 시 이용 제한) ● (마스크 착용 의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관계없이 실내 전체 및 실외 에서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경우 ※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고 벗기 어려운 뇌병변・발달장애인 등에 대해서는 마스크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	
		1 단 계 (운영 유지)		해당 공간의 4㎡당 1명 범위 내에서 실내·외 프로그램 운영 가능 프로그램에 따른 식사 등은 띄워 앉기. 가림막 등의 방법으로 해당 공간에서 좌석 간 1m 이상 이격이 가능하면 제공 비대면서비스 병행 및 시설 이용 시시간제 운영 또는 사전예약제 권장 실내에서 식사 등 음식물 취식 금지. 물 등 음료는 개인별로 섭취 가능 ※ 식당 등 식사 제공 공간에서는 식사가능, 테이블간격 1m 이상 유지	
			<u>생활</u> 시설	시설 특성에 맞게 제한적으로 외출·외박 가능(방역 조치) ※ 외출 후 증상 확인 및 모니터링 강화 1일 인원을 통제하여 면회 실시 ※ 거리두기 단계가 높은 지역에 대한 외출·외박지역 및 면회자 제한 가능	
			<u>방역</u> 조치	위험시설·활동을 통한 유행을 차단하기 위해 시설 인원 제한 등 방역 강화. 방역 상황에 따라 지자체 자율 조치	
		<u>1.5</u> 단 계 (운영 유지)	<u>이용</u> 시설	해당 공간의 4㎡당 1명 범위 내에서 실내·외 프로그램 운영 가능하나, 격렬한 신체 활동 자제 식사 등 제공 시 탁자 간 1m 이상 이격 고위험군 시설의 경우 시간제 운영 및 사전예약제로 전환 운영 실내에서 식사 등 음식물 취식 금지, 물 등 음료는 개인별로 섭취 가능 ※ 식당 등 식사 제공 공간에서는 식사 가능, 테이블간격 1m 이상 유지	

사업명	1판			2판 개정	개정사유
		<u>거리</u> 두기	구분	주요 내용	
			<u>생활</u> 시설	제한적으로 외출·외박 가능(방역 조치) 하나, 대상 지역을 제한 가능 ※ 외출 후 증상 확인 및 모니터링 강화 1회 참석 인원을 통제하여 면희 실시 ※ 거리두기 단계가 높은 지역에 대한 외출·외박지역 및 면회자 제한 가능	
			방역	• 서비스 이용 인원을 50% 이하로 제한	
			<u>조치</u>	하여 운영(이용시설)	
		2 단 계 (운영 유지)	<u>이용</u> 시설	당 시간대 프로그램(서비스) 대상을 이용 정원의 50% 이하가 되도록 조정 (이 경우 종사자를 포함하여 최대 100인을 넘을 수 없음)하며 격렬한 신체 활동 금지 실내에서 식사 등 음식물 취식 금지, 물 등 음료는 개인별로 섭취 가능 전 시설 시간제·사전예약제 원칙 ※ 식당 등 식사 제공 공간에서는 식사 가능, 테이블간격 1m 이상 유지 전 시설 시간제·사전예약제 운영 원칙	
			<u>생활</u> 시설	외출·외박 원칙적 금지 수업을 위한 등교 등 극히 제한적인 경우만 외출·외박 가능 대면 면회 금지. 비접촉 비대면 면회 실시 종사자에 대한 격일제 근무 등 유연근무 실시 권장	
			<u>방역</u> 조치	• 서비스 이용 인원을 30% 이하 또는 해당 공간의 8㎡당 1명 범위 내로 강력 하게 제한(이용시설)	
		2.5 단 계 (운영 유지)	<u>이용</u> 시설	동 시간대 프로그램(서비스) 대상을 이용 정원의 30% 이하 또는 해당 공간의 8㎡당 1명 범위 내로 조정(이 경우 종사자를 포함하여 최대 50인을 넘을 수 없음)하며 격렬한 신체 활동 금지 취약계층 중심으로 서비스 제공하되. 개별 시설별로 인근의 확진자 현황. 감염 가능성, 방역조치 현황, 방역에 용이한 건축물 구조인지 여부 등을 종합 판단하여 운영 유지 여부 결정 ※ 운영 중지시설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유지대책 마련	
			<u>생활</u> 시설	오늘 오바 원칙적 금지, 외부 출입 인원 통제 ※ 수업을 위한 등교 등 극히 제한적인 경우만 외출·외박 가능 대면 면회 금지, 비접촉·비대면 면회 실시 종사자에 대한 격일제 근무 등 유연 근무 실시 권장 전기 기관	

사업명	1판	2판 개정	개정사유
		구분 구요 내용	
	발달장애인 활동서비스 제공기관 내 감염 예방을 위한 추가 조치 (이하 생략)	〈삭제〉	
	● 발달장애인지원센터 협조 사항 (이하 생략)	〈 I 장으로 이동 p.12〉	
	● 시·도 병상 배정 관리체계 구축 (이하 생략)	〈 I 장으로 이동 p.10〉	
III. 주요 장애인 서비스별 대응 지침, 2. 장애인 복지 서비스 제공기관 공통 대응 지침 (41쪽)	● 사회적 거리두기 지속 - 직원 간 또는 방문객 등과 악수 등 접촉하지 않기 - 직원의 좌석 간격 2m(최소 1.5m 이상 유지) 확대 등 근무환경 개선 - 출・퇴근 시간 및 점심시간 교차 실시(유연근 무제, 점심시간 시차 운영 활용 등) - 실내 휴게실, 다기능 활동 공간 등 다중 이용 공간 일시 폐쇄 - 집단 행사, 소규모 모임, 출장 등 연기 또는 취소	● 사회적 거리두기 지속 - 직원 간 또는 방문객 등과 악수 등 접촉하지 않기 - 직원의 좌석 간격 2m 확대 등 근무환경 개선 - 출・퇴근 시간 및 점심시간 교차 실시(유연근 무제, 점심시간 시차 운영 활용 등) - 실내 휴게실, 다기능 활동 공간 등 다중 이용 공간 일시 폐쇄 - 집단 행사, 소규모 모임, 출장 등 연기 또는 취소	대응지침에 따른 변화 내용 현행화
	(신규)	 ● 주요 장애인복지서비스 중 변동사항이 없는 서비스 - 소득지원 - 안전 및 권익보장 지원 - 주거지원 - 기타 서비스사항이 존재하나 하단에 표기되지 않은 개별 서비스 * 세부내용은 부록 장애인 코로나19 안내서 등 95페이지 참조 	

사업명	1판	2판 개정	개정사유
III. 주요 장애인 서비스별 대응 지침, 3. 일상생활 지원 (42-43쪽)	● 활동지원사 등 전문인력의 정기적 건강체크를 통한 건강인력보증제 실시 - 코로나 19 관련 장애인이 안전할 수 있도록 활동지원서비스제공기관에서 활동지원시에 대한 건강인력 보증제*실시 * 코로나 선별검사 수검, 정기적 건강체크 및 보건서약서 작성, 마스크 착용 준수 등 - (활동지원 기관) 활동지원인력의 의심증상을 매일 확인하도록 기관별 감염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있는 활동지원 인력은 업무배제(출근금지) 및 관할 보건소에 즉시 신고 * 의심환자 접촉 이용자·종사자 모니터링은 다음 내용을 준수 ① 환자와 접촉한 마지막 날부터 14일 동안 건강상태 매일 확인, ② 체온은 아침, 저녁으로 2번 확인 ③ 체온이 37.5℃ 이상이거나, 코로나19 임상증상(기침, 호흡 곤란 등)이 있는지 확인하며 증상 발현시 보건소에 연락 - (활동지원 인력) 서비스 제공 시 개인위생 철저, 발열 및 코로나19 임상증상 확인, 마스크 착용 및 손소독(소독제 사용, 충분한 손씻기) 실시후 활동 시작하고, 기관 및 이용자 주거지 내주요 공간 청소, 소독, 환기 등 위생관리 철저히하고, 사회적 거리 두기와 접촉 최소화 적극참여, 집단행사·집합교육 연기 또는 취소 * 밀접접촉자를 돌보거나 증상을 모니터링하는 직원은 반드시 개인보호장비를 착용	(기본원칙)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돌봄공백 최소화	기존과 다른 분류체계 활 용에 따른 지침 재구성 및 대응지침 변화 내용 현행화

사업명	1판	2판 개정	개정사유
		9) 병원 내 돌봄인력 지원 - 고령확진자 등의 신체수발을 위한 돌봄인력 모집 및 사전교육 실시 후 중수본에 연계, 지자체는 필요시 중수본에 돌봄인력 지원 요청, 중수본은 인력 매칭 * 식사, 목욕, 화장실 등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고령 및 장애인 확진자 돌봄 10) 활동지원사 등 전문인력의 정기적 건강체크를 통한 건강인력보증제 실시 - 코로나 19 관련 장애인이 안전할 수 있도록 활동지원서비스제공기관에서 활동지원사에 대한 건강인력 보증제* 실시 * 코로나 선별검사 수검, 정기적 건강체크 및 보건서약서 작성, 마스크 착용 준수 등	
III. 주요 장애인 서비스별 대응 지침, 3. 일상생활 지원 (43쪽)	(신규)	장애아가족 양육지원(돌봄지원),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파견사업 (기본원칙) 지원인력에 대한 방역수칙 준수 1) 방역수칙 준수 - 지원인력에 대한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기관 에서도 지원인력 의심 및 확진시 대체인력을 미리 마련하여 서비스 공백이 없도록 할 것	기존과 다른 분류체계 활용에 따른 지침 재구성 및 대응지침 변화 내용 현행화
III. 주요 장애인 서비스별 대응 지침, 3. 일상생활 지원 (44쪽)	(신규)	● 장애대학생 도우미 지원사업 (기본원칙) 지원인력에 대한 방역수칙 준수 1) 방역수칙 준수 - 각 대학 장애학생지원센터는 도우미에 대한 방역수칙을 교육하며, 도우미 의심 및 확진시 대체인력을 미리 마련하여 서비스 공백이 없도록할 것 2) 원격교육 대비 - 원격교육 대비 - 원격교육의 경우 각 대학별 대책을 미리 마련하며, 세부 사항은 교육부 및 관련 서비스 담당기관과 논의할 것	기존과 다른 분류체계 활용에 따른 지침 재구성 및 대응지침 변화 내용 현행화

사업명	1판	2판 개정	개정사유
III. 주요 장애인 서비스별 대응 지침, 3. 일상생활 지원 (44쪽)	(신규)	● 특별교통수단 운영 (기본원칙) 지원인력에 대한 방역수칙 준수. 확진자(격리대상자) 이송 및 기존 미이용자 관련 대책 마련 1) 방역수칙 준수 - 운영인력에 대한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기관 에서도 운영인력 의심 및 확진시 대체인력을 미리 마련하여 서비스 공백이 없도록 할 것 2) 확진자(격리대상자) 이송 방안 마련 - 확진자 및 격리대상자 병원 및 관련 시설 이동에 대한 대책 마련 - 운전자와 확진자(격리대상자)가 분리된 특별 교통수단 마련 혹은 기존 특별교통수단에 대한 방역 등 조치 철저 3) 기존 미이용자 관련 대책 마련 - 기존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지 않지만 병원 이용이 잦은 장애인(혈액투석이 필요한 신장 장애인)에 대한 이동시 지원대책 마련	기존과 다른 분류체계 활용에 따른 지침 재구성 및 대응지침 변화 내용 현행화
-	3.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유지 지침 장애인·보호자 등의 자가격리 시 서비스 유지 (이하 생략)	⟨Ⅱ장으로 이동 p.21⟩	-
	● 장애인의 격리시설 이용시 서비스 유지 (이하 생략)		
	● 자가격리 대체인력 지원(기준급여 + 생활지원비) (이하 생략)		
	● 격리시설 확충 및 운용인력 확보 (이하 생략)		
III. 주요	2. 장애인 거주시설 대응 지침	4. 건강 및 의료 지원	기존과 다른 분류체계
장애인 서비스별 대응	● 환자(유증상자) 발생 시 예방조치 - 장애인 생활시설의 감염으로 <u>폐쇄가 발생</u> 하는 경우 임시시설, 주변 생활치료센터, 병원 등	(기본원칙) 건강 및 의료 지원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돌봄공백 최소화	활용에 따른 지침 재구성
지침, 4. 건강	지역 대응체계 마련 (중략)	● 장애인거주시설 이용	및 대응지침 변화 내용
및 의료		(기본원칙) 방역수칙 준수, 격리공간 확보 및 서비스공백 예방	현행화
지원 (45~47쪽)			

사업명	1판	2판 개정	개정사유
	- (촉탁의 검진) 코로나 발생기간 동안 생활시설에서는 주1회이상 촉탁의가 시설을 방문하여 감염병예방과 관련한 이용인·종사자 교육및 방역 관련 자문을실시할수 있도록 협조요청(각 시설에서실시) * 촉탁의가 없는 경우에는 연계병·의원 또는지역보건소(지소,진료소)협조요청 ● 환자(유증상자)및 접촉자격리 지역사회접근성이낮고,무연고자가다수인시설이용자의특성을고려할때,자가격리가불가능한바,별도의동일집단격리방안마련필요 - (공간분리)환자발생을 대비하여사전격리공간확보*,환자(유증상자)발생시 밀접접촉자와간접접촉자분리(식사,위생공간)(중략) - (이송지원)와상장애인환자(유증상자)는보건소구급차및 119,기타장애인환자(유증상자)*는특장차	1) 환자(유증상자) 발생 시 예방조치	
	상황별 분류 이용자 감염 시 종사자 감염 시 ○ 와상 등이동 성향이 낮은 이용자 ○ 환자(유증상자)는 이송조치(병원) ○ 감염 종사자로부터 서비스를 제공받 거나 접촉한 이용 자본기 등을 고려, 시설 내 격리공간에서 격리 또는 격리시설 이송 ○ 양자 ○ 환자(유증상자)는 이송조치(병원) ○ 감염 종사자로부터 서비스를 제공받 거나 접촉한 이용 자본 점복기 등을 고려, 시설 내 격리 공간에서 격리 또는 격리시설 이송 ○ 양자 ○ 환동과 생활특성 고려 시 이용자 및 종사자간 밀접접촉으로 인해 시설 내 전파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1차적으로 동별 및 충별 격리 ※보건소 등 역학조사를 통하여 2차적으로 선별 격리	상황별 분류 이용자 감염 시 종사자 감염 시 • 환자(유증상자)는 이감염 종사자로부터 서비스를 제공받 이용조치(병원) 서비스를 제공받 거나 접촉한 이용 자는 잠복기 등을 고려, 임시생활시설로 이송 그단, 임사생활시설이 낮은 이용자 보존하여 이송이 어려운 경우 시설 외부에 분리공간을 마련하여 격리 • 종사자는 자가격리 • 발달장애등이 많은 이용자 의용자 생활특성 고려 시 이용자 및 종사자간 밀접접촉으로 인해 시설 내 전파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임시생활시설 이용(-단, 임시시설이 부족하여 이송이 어려운 경우 시설 내 전파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임시생활시설 이용(-단, 임시시설이 부족하여 이송이 어려운 경우 시설외부에 분리공간을 마련하여 격리	

사업명	1판	2판 개정	개정사유
III. 주요 장애인 서비스별 대응 지침, 4. 건강 및 의료 (47쪽)	● 대체인력 확보 - (중략) • 자치단체 담당자는 대체인력 제공기관과 협력 체계 구축 인력확보 추진 * 시설 및 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이 부족할 경우를 대비하여 기관별 퇴직자 또는 사회봉사자 등의 예비인력 풀을 사전에 작성하여 환자 발생 시 활용 (신규)	3) 대체인력 확보 - (중략) • 자치단체 담당자는 대체인력 제공기관과 협력 체계 구축 및 인력확보 추진 * 시설 및 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이 부족할 경우를 대비하여 기관별 퇴직자 또는 사회봉사자 등의 예비인력 풀을 사전에 작성하여 환자 발생 시 활용 하며, 장애인식개선교육 등 선이수 요청 4) 선제검사 실시 - (시설 내 검사) 종사자 대상 PCR 1주 간격으로 실시 - (지자체 역할) PCR관련 내용 점검 및 안내 (지도) ● 발달장애인 부모상담 지원사업, 가사·간병방문 지원사업 (기본원칙) 지원인력에 대한 방역수칙 준수 - 지원인력에 대한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기관 에서도 지원인력 의심 및 확진시 대체인력을 미리 마련하여 서비스 공백이 없도록 할 것 2) 비대면 상담 인정 - '발달장애인 부모상담 지원사업' 관련 비대면 상담 인정 - 코로나 블루 등과 관련된 기타 심리지원사업 및 기관 필요시 연계 3) 바우처 기간 연장 - '발달장애인 부모상담 지원사업' 관련 바우처 기간 연장	기존과 다른 분류체계 활용에 따른 지침 재구성 및 대응지침 변화 내용 현행화
III. 주요 장애인 서비스별 대응 지침, 4. 건강 및 의료 지원 (48쪽)	(신규)	●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 (기본원칙)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상황에 따른 사업 실시 1)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에 따른 권고 실시 -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에 따라 각 지자체별 실시 (미실시) 권고 - 기존 사업(단체여행)과 달리 개별 가족 단위 자율적 여행 실시 등 대책 마련	기존과 다른 분류체계 활용에 따른 지침 재구성 및 대응지침 변화 내용 현행화

사업명	1판	2판 개정	개정사유
III. 주요 장애인 서비스별 대응 지침, 5. 그 밖의 지원 (49쪽)	(신규)	5. 그 밖의 지원 가. 보육 및 교육 지원	기존과 다른 분류체계 활용에 따른 지침 재구성 및 대응지침 변화 내용 현행화
		(기본원칙) 보육 및 교육 지원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돌봄공백 최소화	
		●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발달재활서비스, 언어 발달지원, 아이돌보미 우선지원, 여성장애인 교육 지원, 장애인 자동차 운전 교육 지원, 정보화 방문교육 서비스	
		(기본원칙) 지원인력에 대한 방역수칙 준수,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상황에 따른 사업 실시	
		1) 방역수칙 준수 - 지원인력에 대한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기관에서도 지원인력 의심 및 확진시 대체인력을 미리 마련하여 서비스 공백이 없도록 할 것 2) 바우처 사용기간 연장 - 발달재활서비스, 언어발달지원 바우처의 경우가용 기간을 12월 말까지 연장하여 사용 가능 3)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에 따른 권고 실시 -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등 시행시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에 따라 서비스 선택적 실시(미실시) 권고 * 장애인 운동과 관련된 사업의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별 단계에 따른 실내 체육시설 사용불가시 해당 서비스 미실시 권고 등 - 대규모 교육 등 지양	
III. 주요 자에이		나. 고용 지원	기존과 다른 분류체계
장애인 서비스별 대응 지침, 5. 그 밖의 지원 (50-51쪽)		(기본원칙) 고용 지원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	문규세/계 활용에 따른 지침 재구성 및 대응지침 변화 내용 현행화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기본원칙) 시설 내 인력에 대한 방역수칙 준수, 고용유지지원금 및 방역물품 지원	
		1) 방역수칙 준수 - 시설 내 인력에 대한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기관에서도 지원인력 의심 및 확진시 대체 인력을 미리 마련하여 서비스 공백이 없도록 할 것	

사업명	1판	2판 개정	개정사유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코로나19 피해기업 고용 유지지원금' 활용 - 지자체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불요불급한 운영비(예; 업무추진비, 원부자 재구입비, 수용비 등)등의 절감을 통해 시설이 경영여건이 허락하는 한 휴관 기간 중 휴업수당 등을 최대한 지급할 수 있도록 유도ㆍ지원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며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시설이 지급한 임금은 고용노동부가 시행하는 '코로나19 피해기업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를 통해 보전 받을 수 있도록 관할지역 내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 적극 안내 * (고용부 '코로나19 대응 고용안정 지원대책, '20.2.28.) 매출액 감소 등 경영 악화 시업종에 관계없이 신청 가능, 지급임금의 최대 3/4까지 지원, 7.31까지 한시 운영 - 경영여건이 크게 열악한 시설은 근로기준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기준(평균 임금의 70% 이상)에 미치지 못하는 휴업수당 지급'에 관한 승인을 관할지역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함께 안내 * (신청방법 및 문의처) 고용보험 누리집 (www.ei.go.kr)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복지+센터 기업지원과(팀) 방문(국번 없이 1350) [불임 4] 참조	2) '코로나19 피해기업 고용유지지원금' 활용 - 지자체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불요불급한 운영비(예: 업무추진비, 원부자 재구입비, 수용비 등)등의 절감을 통해 시설이 경영여건이 허락 하는 한 휴관 기간 중 휴업수당 등을 최대한 지급할 수 있도록 유도ㆍ지원 (표 삭제) - 시설이 지급한 임금은 고용노동부가 시행하는 '코로나19 피해기업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를 통해 보전 받을 수 있도록 관할지역 내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 적극 안내 (삭제) - 경영여건이 크게 열악한 시설은 근로기준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기준(평균 임금의 70% 이상)에 미치지 못하는 휴업수당 지급'에 관한 승인을 관할지역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함께 안내 (삭제)	

사업명	1판	2판 개정	개정사유
	(신규)	3) 방역물품 및 방역장비 지원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방역 장비 지원 * 열회상카메라, 손소독기, 소독방역기 등 지원 (시설당 4백만원)	
		● 근로지원인 제도, 중증장애인 지원고용 (훈련수당)	
		(기본원칙) 시설 내 인력에 대한 방역수칙 준수	
		1) 방역수칙 준수 - 시설 내 인력에 대한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기관에서도 지원인력 의심 및 확진시 대체인력을 미리 마련하여 서비스 공백이 없도록 할 것	
		2) 비대면 교육 실시 - 근로지원인 교육 관련 비대면 교육 실시	
III. 주요	(신규)	다. 문화 및 여가 지원	
장애인 서비스별 대응 지침, 5. 그 밖의 지원 (51쪽)		(기본원칙) 문화 및 여가 지원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	
		 공공시설 이용요금 면제, 산림복지서비스 이용 자의 비용 감면, 습지보호지역 이용료 면제, 자연휴양림 등 이용료 면제, 문화바우처사업 (통합문화이용권),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기본원칙) 서비스 제공 기관 및 인력에 대한 방역수칙 준수,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상황에 따른 사업 실시	
		1) 방역수칙 준수 - 서비스 제공 기관 및 인력에 대한 방역수칙을 준수	
		2)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에 따른 권고 실시 - 서비스 제공시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에 따라 서비스 선택적 실시(미실시) 권고	
		* 산림복지서비스 등 제공시 사회적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실내인원 제한 등 안내 - 대규모 교육 등 지양	

사업명	1판	2	판 개정	개정사유
CHAPTER 부록. 장애인 코로나19 안내서 등	(신규)	(<u>중략)</u> • 장애인, 노인 등이	9 안내서(3판, 배포용) 이 코로나19를 쉽게 이해할 나19 정의, 관련 용어설명	세부 내용에 대한 구체적 설명의 필요성
(55쪽)		<u>목차</u> •코로나19는?	주요내용 • 코로나19 정의 • 감염경로 • 코로나19 용어정의	
		<u>·코로나19와</u> <u>관련된 말</u>	- 비말감염, 잠복기, 확진자, 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 접촉자, 기저질환, 음성/양성, 완치, 선별진료소, 국민안심 병원, 생활치료센터, 자가 격리, 동선, 방역, 역학조사, 예방접종센터)	
		<u>·코로나19에 대응하는</u> <u>과정</u>	<u>• 코로나19 단계 설명</u>	
		<u>·코로나19에 걸리면</u> <u>어떻게 아픈가?</u> <u>·코로나19에 걸린 것</u>	<u>• 코로나19 증상</u>	
		처럼 아프다면? <u>*코로나19에 걸리지</u> 않으려면		
		<u>◦코로나19 검사를</u> 받아야 한다면?	<u>○ 검사 수칙, 검사 순서</u>	
		<u>•코로나19로 격리해야</u> <u>한다면?</u>	<u>○ 필요 지원 신청(이동지원.</u> 일상생활 지원) <u>○ 격리 수칙</u>	
		<u>•코로나19 예방접종을</u> <u>맞으려면?</u>	<u>·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상</u> 통보 <u>· 예방접종 절차</u>	
		<u>* 코로나19로 스트레스를</u> 받는다면?	· 스트레스 대처방법, 상담전화	
		○코로나19 관련 연락처	<u>◦ 정보제공 홈페이지, 보건소</u> <u>상담전화(1339)</u>	
		<u>•코로나19 대비 카드</u>	○ 응급상황 대비 기록 카드 (이름, 기저질환, 복용약 등) ○ 응급대비 사전 체크리스트 (확인표)	
		(추가)		

사업명 1판	2판 개정	개정사유
R 부록. 장애인 코로나19 안내서 등 (61-62쪽)	예방접종센터 코로나19 예방 주사를 맞기 해 예방접종센터에 갑니다." 그림 내로나19 걸리지 않도록 방주사를 맞으러 가는 곳으로 내국에 255개가 있습니다.(61쪽) 프로나19, 이렇게 대처합니다(62쪽) 코로나19, 이렇게 대처합니다. 지경제 경우	세부 내용에 대한 구체적 설명 필요

사업명	1판	2판 개정	개정사유
CHAPTER 부록. 장애인 코로나19 안내서 등 (74쪽)	(신규)	교로나19 예방주사는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맞습니다. ■ 코르스에 예방주사를 맞으하는 연락이 됩니다. ● 예방자사를 맞으하는 연락이 됩니다. ● 예방점 상징 영화에 영화에 얼마하니다. ● 예방점 정신에 방향하면 함께 생명하니다. ● 예방점 정신터에 가면 ● 예방점 정신터에 가면 ● 예방점 장신터에 가면 ● 예방점 사람이에 대답하니다. ● 예장의 사가 되는 자사에 하나 사람에 가다리나 자신에 하나다. ● 여성을 확인 가가 자사를 맞은 후 아른 곳이 있는지 참시 가다였다가. 안내 목주는 사람이 가도 한다고 하면 있으로 들어줍니다. ● 예방점 장신가가 자사를 맞은 후 아른 곳이 있는지 참시 가다였다가. 안내 목주는 사람이 가도 한다고 하면 있으로 들어줍니다. ● 예방점 장신가가 자사를 맞은 후 아른 곳이 있는지 참시 가다였다가. 안내 목주는 사람이 가도 한다고 하면 있으로 들어줍니다. ● 예방점 장신리가 자사를 맞은 후 아른 곳이 있는지 참시 가다였다가. 안내 목주는 사람이 가도 한다고 하면 있으로 들어줍니다. ● 이를 확인 수 예관 수 집중 수 반응 확인 수 술구 에인표 작성 수 예관 수 제관 수 집중 수 반응 확인 수 술구	세부 내용에 대한 구체적 설명의 필요성
CHAPTER 부록. 장애인 코로나19 안내서 등 (79쪽)	(신규)	2. 시각 지원판/의사소통 도움 그림·글자판 사용 마뉴얼 프로나의 (임시산병진료소·의료전용 「의사소통 도용 그림·글자산기 지원만, 사용 매뉴업(의) > 22601224 - 프로나의 (임시산병진료소용 조용 그림·글자작기 지원만, 사용 매뉴업(의) > 프로나의 (임시산병진료소용 조용 그림·글자작기 지원만, 사용 매뉴업(의) > 프로나의 (임시산병진료소용 조용 그림·글자작기 지원만, 사용 매뉴업(의) 지료 표현 전체 제상인료소용 교육 기업자전 프로마전(제) 지료 표현 전체 제상인료소용 교육 기업자전 교육 전체 기업자전 기업자	세부 내용에 대한 구체적 설명의 필요성

사업명	1판	2판 개정	개정사유
CHAPTER 부록. 장애인 코로나19 안내서 등 (95쪽~ 115쪽)		3. 주요 장애인복지 서비스 코로나19 대응 안내 • 소득지원 - 변동사항 없음 [표] • 일상생활지원 - 현행 유지(대면서비스에 대한 일부 변동) [표] • 건강 및 의료 지원 - 현행 유지(대면서비스에 대한 일부 변동) [표] • 안전 및 권익보장 지원 - 현행 유지(대면서비스에 대한 일부 변동) [표] • 보육 및 교육 지원 - 현행 유지(대면서비스에 대한 일부 변동) [표] • 고용 지원 - 현행 유지(대면서비스에 대한 일부 변동) [표] • 문화 및 여가 지원 - 현행 유지(대면 및 현장방문 서비스에 대한 일부 변동) [표] 4. 코로나19 장애인 지원 사례 및 추진현황 (이하 생략) (추가)	대용에 대한 구체적 설명의 필요성